

#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2. 2. 11.

복 지 건 설 위 원 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1.26. 성동구청장
- 나. 회부일자: 2022.1.27.
- 다. 상정일자: 2022.2.10.

### 2.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및 예외사항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및 예외사유 신설(안 제8조의2)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1. 12. 16. ~ 2022. 1.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행정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sup>1)</sup>의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예외사항 등 우리구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8조의2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과 관련한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환경미화원 등 청소작업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안전기준 단서조항에 따른 예외사유를 규정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청소 작업환경과 안전기준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 최근 환경미화원이 근무 도중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한 가운데, 2021년 지난해 전국에서 환경미화원이 신청한 산업재해 접수건이 최소 12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 산재 신청 건수 총 869건 중 추락과 교통사고에 의한 골절이 806건으로 92%가 넘는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에는 강원도 춘천시에서 청소차와 승용차의 추돌사고가 발생해 청소차 뒤 발판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여 안전기준에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조항을 신설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되었으며, 그에 발맞춰 우리구도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예외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 다만, 주간작업을 실시할 시 차량통행, 주민보행 등 생활 불편 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쓰레기 배출시간 변경 등으로 인한 주민 혼란이 예상되기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시간, 운반거리 등을 고려하여 야간작업이 더 효율적일 경우도 있기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내 주간작업을 실시하는 곳으로는 도봉구, 강동구가 있습니다.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

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에 안전장치 설치, 환경미화원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내용과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의 예외사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우리 구 작업환경에 맞는 예외사유를 마련하는 적절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